

영등포구의회
제 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6. 10.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69호로 2016년 10월 14일 박미영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안 제6조, 제7조)

다.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안 제8조)

라.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마.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 9. 30. ~ 10. 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시행규칙까지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1)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소음저감 실천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2)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 공사장 등의 발생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하고
-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해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을 사전 심사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소음저감 자율 참여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를 면제하고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전문개정 2014.2.14.]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

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 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0.6.30., 2014.1.6.>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⑥ **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⑦ **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